

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관련 주요사항 안내

□ 지원금 청구방법

- 서울주거포털 → 마이페이지 →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→ 자세한히보기 → ‘지원금 청구 등록’ → 해당 회차 등록

□ 첨부서류

- 해당 월에 이체(납부)한 계좌이체 확인증 등
 - 몇월분 월세에 해당하는지 상관없이 해당 월에 이체한 내역으로 심사
 - 서류미비, 미청구, 추가합격 등으로 22.6 ~ 23.3월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받지 못한 월의 보완 서류(이체증 등)를 첨부서류로 추가 등록
 - * 하나의 파일로 등록 또는 알집으로 등록 가능

※ 주소 이전시 청구기간내 변경/중지신청 필수(미신청시 지급불가)

□ 이체일자,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

- 해당 회차의 마지막 달 기준으로 작성
- '22년 5회차의 경우 미신청하여 총 10달분을 못 받은 월에 대해 **이체금액** 작성(2개월 합산 아님)

예시>

회차	해당 이체 월	월세 이체일자	이체금액 (단위: 원)	이체금액 중 월세 해당금액 (단위: 원)	월세받는사람	입금자	증빙자료
1회차	6,7,8월	2022-08-20	500,000	400,000	임대인	김정년	과월이체 과월이체 과월이체 과월이체

이체일자는 2022-11-00
이체금액은 11월에 이체한 금액

첨부파일은 3개까지 가능
이를 넘을 경우 압축하거나 하나의 PDF 파일로 첨부

□ 지급중지 관련

- 해당 회차 기간 내에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(이체증 등록 필수)
- '22년 2회차(9~11월분) 예시
 - 10월중 중지사유 발생 : 9월 월세이체 ○, 10월 월세이체 × → 9월분 지급 9월 월세이체 ○, 10월 월세이체 ○ → 9, 10월분 지급

□ 월세납부 증빙서류

① 계좌이체(예시)

< 주요사항 >

- ① 이체금액
- ② 이체일자
- ③ 보내는 사람
 - 보내는 사람이 임대인과 같을 필요는 없음
- ④ 받는 사람
 - 받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**임대인 및 공동임대인**
 - 계약서에 **월세이체 대상으로 별도 지정된 사람(법인)**도 가능 (월세이체 대상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표시, 수기도 가능)
 - 계좌번호는 확인대상 아님

※ 계좌이체 확인증 양식에 상관 없이 위의 4개 항목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

※ 계좌이체 확인증 발급 방법은 인터넷 포털에서 은행별 계좌이체 확인증 발급 방법으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, 각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 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음

※ 받는 사람과 임대인 일치를 위해서 해당 회차 기간 중 이사를 한 경우, 지원금 청구 전 전입신고 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함

□ 첨부서류 보완방법

○ 구체적인 사례(예시 확인)

- ① 10월 30일에 이사를 하면서 월세 납부일을 매월 25일로 정하고, 11월분 월세는 미리 납부하여 11월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(이전 거주지의 10월분 월세는 이미 납부하여 10월 이체내역이 2개인 상황)
- ② 10월분 월세를 연체하여 11월 2일에 납부하였고, 11월분 월세는 제때 납부한 경우(10월 이체내역이 없고, 11월 이체내역이 2개인 상황)
- ③ 매년 1월에 12개월분 월세를 연납하는 경우(1월 이체내역만 있고, 9, 10, 11월 이체내역이 없는 상황)

○ 보완방법

- ① 10월 30일 이체 확인증과 함께 월차임 납부 확인서(11월분) 제출
- ② 11월 2일 이체 확인증과 월차임 납부 확인서(10월분) 제출
- ③ 1월 이체 확인증과 월차임 납부 확인서(9, 10, 11월분) 제출

※ 위의 방법은 카드결제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

※ 월차임 납부 확인서 작성방법은 현금납부 증빙서류와 동일하므로 이전 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①번 사례의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지 변경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.